

서울특별시 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932
----------	-----

2023년 6월 20일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5월 31일, 소영철 의원 외 23명
나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8일
다. 상정일자 : 제319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(2023년 6월 20일 상정, 수정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소영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는 재난 발생 시 개인용 무선단말기, 지역 방송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예보·경보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고 있음.
- 그러나 '신속히 전파하도록' 하고 있을 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달리 정하고 있지 않아 시민이 문자 내용만으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음.
- 이에 재난 예보·경보 발령 시 발령 사유,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,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 및 대피소 위치,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전파내용에 포함하도록 함.

나. 주요골자

- (1)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재난 예보·경보 전파 시 발령 사유, 재난발생 위치 및 시간,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 및 대피소 위치,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전파내용에 포함하도록 함(안 제5조제4항).

3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■ 개 요

- 본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예보·경보를 전파함에 있어 발령 사유,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, 대피방법 및 대피소 위치 등의 사항을 전파내용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,
- 지난 5월 31일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직후 서울시민에게 발송된 민방공 경계정보 위급 재난정보에 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혼란을 야기했던 사안이 계기가 된 것으로 파악됨.

[표]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 구축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 ④·⑤ (생략)	제5조(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 구축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제3항에 따른 재난 예보·경보 전파 시 다음 각 호의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포함하여야 한다.</u> 1. <u>재난 예보·경보 발령 사유</u> 2. <u>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</u> 3. <u>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, 대피소 위치 등</u> 4. <u>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</u> ⑤·⑥ (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)

■ 재난경보와 민방공경보

- 지난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한 서울시 재난문자 발송건은 ‘재난정보’와 ‘민방공경보’ 간 전파체계에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,

- ‘재난정보’와 관련하여 「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」(행정안전부예규 제244호)에 따르면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요청 및 승인 등의 업무에 대한 운영책임자는 시·도 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있는 반면,
- 민방공경보 관련한 경우는 시·도정보통제소장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음.

제7조(운영책임자) ①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요청 및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영책임자를 둔다.

1. 행정안전부 :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(민방공경보 관련한 경우는 중앙민방위정보통제센터장)
2. 시·도(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: 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(민방공경보 관련한 경우는 시·도정보통제소장)
3. 시·군·자치구 : 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
4.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직접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송출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: 해당 기관의 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

② 운영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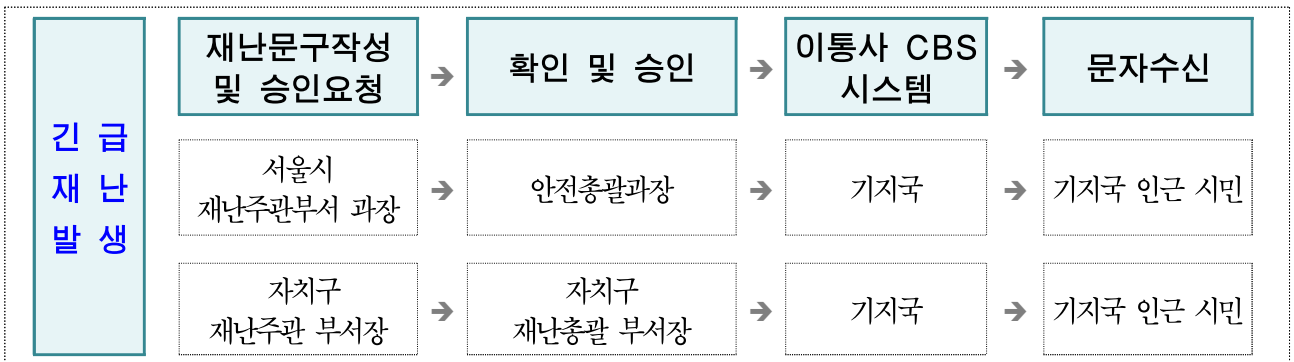
1.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 송출요청
2. 사용기관의 재난문자방송 발송요청에 대한 승인
3. 재난문자방송의 중복내용 차단 및 제한
4. 그 밖에 발송현황 관리 등 재난문자방송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

- 한편, ‘민방공경보’는 「민방위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시행규칙, 「민방위 경보 발령·전달 규정」, 「민방위경보 실무대응 매뉴얼」을 따르는 것으로
- 지난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문자발송은 「민방위 경보 발령·전달 규정」 제10조1)에 따른 보조수단으로써의 긴급재

1) **제10조(민방공경보방송)** 제9조에 따른 경보방송은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의 규정에 따라 라디오 및 텔레비전 문자방송을 실시하고 보조수단으로써 이동멀티미디어방송(DMB) 및 긴급재

난문자방송(CBS²⁾)에 해당되는 것이며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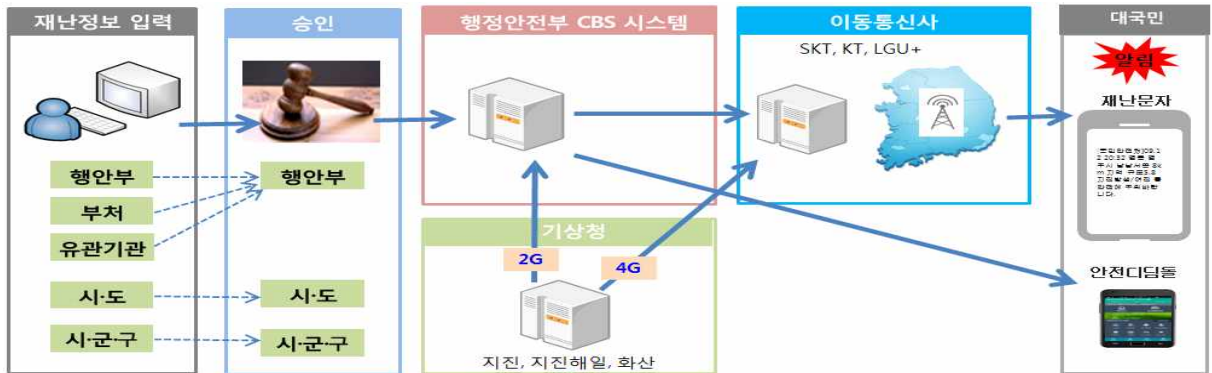
- ‘민방공경보’는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, 「통합방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등의 민방위사태에 관한 것으로 군사적 성격이 강하다 할 수 있음.
- 따라서 ‘재난정보’와 ‘민방공경보’ 간에는 근거법령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vs. 「민방위기본법」) 및 운영체제(「재난 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」 vs. 「민방위 경보 발령·전달 규정」)상 차이가 있으며,
- 참고로, 발송 또는 전파체계에 있어 ‘재난문자’는 행정안전부, 각 중앙부처, 유관기관에서 재난 정보를 입력한 경우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이,
-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정보를 입력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재난주관부서의 장이 승인을 하면 행정안전부 CBS시스템에서 각 이동통신사 통신망을 통해 국민에게 발송되는 구조임.



[그림] 재난문자 발송 절차도

¹⁾ 난문자방송(CBS)등을 이용한 음성, 문자방송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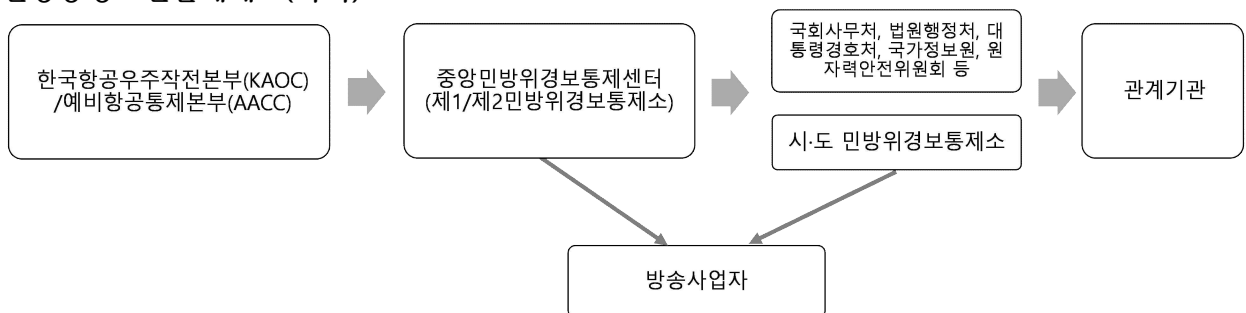
2) Cell Broadcasting Service



[그림] 재난문자 송출 체계

- 반면에, ‘민방공경보’의 경우 3) 공군사령관으로부터 민방공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발령하여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/제2민방위경보통제소를 통해 시·도 민방위경보통제소, 각 중앙부처, 지방자치단체, 관계기관 등에 전달을 하거나
-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시사·특별자치도지사(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)가 발령하여 시·도 민방위경보통제소(또는 시·군·구 경보책임자)를 통해 전달토록 하고 있음.

3) 민방공경보전달체계도(약식)



■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(안 제5조)

- 동 개정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관련한 예보·경보 전파 시 ‘재난 예보·경보 발령 사유’, ‘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’ 등 재난정보와 대피소가 필요한 경우 ‘대피방법’, ‘대피소 위치’ 등 행동요령을 포함시켜 전파토록 함으로써
- 시민에게 보다 구체적인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재난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라 여겨져 적극 공감할만하다 하겠음.
- 다만, 재난 예보·경보 전파에 활용되는 현행 제5조제3항에 따른 매체는 지역 방송사, 개인용 무선단말기, 문자 전광판, 버스 정보안내기, 학교 및 관공서,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,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등으로 그 특성이 다양하여
- 본 개정안과 같이 일률적으로 재난 예보·경보 발령 사유,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, 대피방법, 대피소 위치 등을 포함토록 의무화하기보다는 전파매체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 판단됨.
- 더욱이, 재난문자의 경우는 「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」에 재난유형별 190개의 표준문안⁴⁾이 마련되어 있고(〔붙임 1〕 참조),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문자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,
- 개정안에서와 같이 자치법규로 전파내용을 강행규정으로 의무화

4) 재난문자방송시스템에 입력된 재난유형별 행동요령이 포함된 방송문안을 말한다.

할 경우 충돌 및 행정적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노력의무로 순화하여 전파매체의 특성 및 시스템 한계 등 현실적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여겨짐([표] 수정의견 참조)

[표]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

개 정 안	수정의견(안)
제5조(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 구축) ① ~ ③ (생략) ④ 제3항에 따른 재난 예보·경보 전파 시 다음 각 호의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포함 하 ^아 야 한다. 1. 재난 예보·경보 발령 사유 2.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3.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, 대피소 위치 등 4.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	제5조(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 구축) ① ~ ③ (개정안과 같음) ④ 제3항에 따른 재난 예보·경보 전파 시 다음 각 호의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포함 하 ^{도록 노력} 하여야 한다. 1. 재난 예보·경보 발령 사유 2.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3.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, 대피소 위치 등 4.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해당 없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: 해당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
8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 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932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23년 6월 20일

제안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재난 예보·경보 전파에 활용되는 현행 제5조제3항에 따른 매체는 그 종류와 특성이 다양하고 긴급재난문자의 경우 각각의 휴대전화 등록 없이 재난문자 대상지역 전체 시민에게 일괄 전송되는 방식이어서 개별 맞춤형 발송이 불가능한 구조일 뿐만 아니라 글자수가 90자로 제한되기 때문에
- 개정안과 같이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바 현실성을 고려하여 강행규정을 노력의무로 순화함으로써 매체 특성 및 시스템 한계 등을 고려한 탄력적 적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.

2. 주요골자

- 가. 현실성을 반영하여 강행규정을 노력의무로 순화함(안 제5조제4항).

서울특별시 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4항 중 “포함하여야 한다”를 “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5조(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 구축) ① ~ ③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	<p>제5조(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 구축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제3항에 따른 재난 예보·경보 전파 시 다음 각 호의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포함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<u>재난 예보·경보 발령 사유</u></p> <p>2. <u>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</u></p> <p>3. <u>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, 대피소 위치 등</u></p> <p>4. <u>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</u></p> <p>⑤·⑥ (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)</p>	<p>제5조(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 구축) ① ~ 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1. ----- --</p> <p>2. ----- -</p> <p>3. ----- ----- -</p> <p>4. ----- --</p> <p>⑤·⑥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④·⑤ (생략)</p>		

서울특별시 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재난 예보·경보 전파 시 다음 각 호의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재난 예보·경보 발령 사유
2.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
3.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, 대피소 위치 등
4.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 구축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④·⑤ (생략)</p>	<p>제5조(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 구축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제3항에 따른 재난 예보·경보 전파 시 다음 각 호의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u>1. 재난 예보·경보 발령 사유</u><u>2.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</u><u>3.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, 대피소 위치 등</u><u>4.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</u> <p>⑤·⑥ (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)</p>